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의안 번호	423
----------	-----

제출연월일: 2025년 5월 1일

제 출 자: 평창군의회의회장 (의회사무과장)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청구요건을 심의하여 청구 수리 여부의 결정을 구함.

2. 개요 및 추진경위

□ 개요

가) 청구조례명: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청구인의 대표자: 김용근(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갈골길 312-3)

다) 청구내용: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이격거리 등 규정 신설

라) 청구취지: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창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고원관광도시인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함.

□ 추진경위

가) 주민조례청구(안) 조례 접수: 2024. 8. 30.

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등록: 2024. 9. 5.

다)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2024. 9. 23.

라) 서명요청기간: 2024. 9. 24. ~ 2024. 12. 23. / 3개월간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명

※ 제출기한: 2024. 12. 30.까지(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마) 청구인명부 제출: 2024. 12. 20.

바) 청구인명부 공표: 2024. 12. 24.

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12. 24. ~ 2025. 1. 3.

※ 이의신청 없음

아) 청구인명부 유효성 확인 기간: 2025. 1. 3. ~ 4. 1.

자)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2024. 12. 20. 제출 기준)

- 제출 서명인수: 651명(수기서명 640명, 전자서명 11명)

- 필요 서명인수: 373명

- 유효 서명인수: 357명

차) 필요 서명수 미충족으로 인한 보정 요청: 2025. 3. 25.

- 보정기간: 2025. 3. 26. ~ 4. 4. / 10일간

- 제출기한: 2025. 4. 9.까지

- 보정결과: 기한 내 미제출

카) 사전통지: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통지(2025. 4. 23.) / 제출기한: 2025. 5. 2.까지

3. 검토사항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법 제4조): **해당없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유효서명인 수 충족 여부(법 제5조): **미충족(유효 서명인수 부족)**

○ 필요 서명인수: 373명

※ 평창군 공고 제2024-15호(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1/100 이상)

○ **유효 서명인수: 357명** ※ 필요 서명인수 부족(16명)

(단위 : 명)

제출 서명수	유효 서명수	무효 서명수						
		계	필수기재 사항누락	중복서명	조회불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수리전 서명	선거권 결격자	비고
651	357	294	171	45	78	0	0	

※ 필수기재사항: 주소 누락(세부주소, 아파트 동, 호수 포함), 생년월일 일부 누락 등

※ 조회불가: 관외거주, 이름과 생년월일 불일치, 확인불가 등

청구인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법 제10조제1항): **미충족**

○ 1차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청구인명부 제출일
2024. 12. 30.	2024. 12. 20.

○ 2차 서명부 ※ 필요 서명인수 부족으로 인한 보정

보정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보정청구인명부 제출일
2025. 4. 9.	미제출

4. 참고사항

가) 청구조례안(평창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나) 2024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붙임2
다)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서명기간 표시)	붙임3
라) 청구인명부 보정 요청(서명기간 표시)	붙임4
마) 관련법규	붙임5
바) 서명부 유·무효 확인 세부사항	별첨1
사) 서명부 사본	별첨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 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4.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5.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6. 허가 시 그 밖의 소음·진동·경관·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공고 제2024 - 15호

**2024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1. 관련법령

가.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2. 위 관련법령에 따라 2024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5일

평창군 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및 청구 연서 주민수**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청구 연서 주민수
계	주민등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37,247	37,184	63	46	37,201	373

※ 주민등록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계	주민등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37,247	37,184	63	46	37,201

※ 주민등록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관련공문: 행정담당관-357(2024. 01. 03.)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명	김용근	생년월일	1961.04.18.
주소 (거소·체류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갈골길 312-3 (전화번호 : 010-9650-6042)		
청구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평창군 순계회) 조례의 [<input type="checkbox"/>]제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개정 [<input type="checkbox"/>]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9월 23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평창군의회회장 직인</p>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



평창군의회



수신 김용근(청구인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주민조례(개정) 청구인 명부 보정 요청

2024. 12. 20.(금) 제출하신 「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검토결과, 유효한 서명인 수가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에 미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 보정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서명인수: 651명
- 나. 유효 서명인수: 357명
 - ※ 필요 연서 주민수는 373명으로 16명 부족
- 다. 추가필요 서명인수: 16명
- 라. 보정기간: 2025. 3. 26.(수) ~ 2025. 4. 4.(금), (10일간)
- 마. 보정방법
 - 무효처리된 서명을 보정
 - 당초 서명하지 않은 주민의 새로운 서명
- 바. 제출기한: 2025. 4. 9.(수)까지
- 사. 제출장소: 평창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아. 기타사항: 유·무효 확인은 보정된 서명부 제출일 기준

붙임 서명부 세부내역 1부(별송). 끝.

관련공문: 의회사무과-1316(2025. 03. 2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평창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